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제 안 자 : 행정안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 사 경 과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배준영의원	2025. 5. 9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5.8.25.) 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5.8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모경종의원	2025. 6. 30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5.8.25.) 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5.8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8.26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(2025.9.25.)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

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등).

법률 제 호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보조금ㆍ지방교부세,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“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”을 “인천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의회의장,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”으로 한다.

같은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“중구청장”을 “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”으로, “구청장 선거”를 “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”로 하고, 같은 부칙 같은 항 제2호 중 “동구청장”을 “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”으로, “구청장 선거”를 “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”로 하며, 같은 부칙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구청장”을 “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”으로, “구청장

선거”를 “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”로 하고, 같은 부칙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,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
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.
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같은 부칙 제5조제1항 중 “동구청장이나”를 “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”로, “서구청장이나”를 “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”로, “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”을 “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

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<신 설>	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보조금·지방교부세, 재정 투·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 제3조(선거에 관한 특례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	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----------인천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의회의장,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의회의장은----------. 제3조(선거에 관한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

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청장 및 중구·동구·서구의회의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.	----------.
1. 인천광역시 중구청장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구청장 선거	1. ----------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----------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
2. 인천광역시 동구청장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구청장 선거	2. ----------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----------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
3. 인천광역시 서구청장: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구청장 선거	3. ----------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----------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
4.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의회의원 선거	<삭 제>
5.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선거	<삭 제>

6.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: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의회의원 선거	<삭 제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,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<신 설>	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

	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.
<신 설>	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제5조(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	제5조(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
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·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.	① ----------동구청장·중구의회의장·동구의회의장이나----------서구청장·서구의회의장이나----------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